

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안전·보건관리시행내규

제1장	총	칙	1
제2장	조	직 과 직 무	2
제3장	산	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	5
제4장	안	전 보 건 교 육	6
제5장	재	해 수 습 및 대 책 수 립	8
제6장	보	칙	10
부	칙	11

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안전·보건관리시행내규

제 정 2019.10.4.

개 정 2024. 1. 16.(내규 제67호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업재해”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안전사고”란 고의적 의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인적,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.
3. “안전관리”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, 기계적 결함 상태 또는 불안정한 행동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 및 시정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.
4. “보건관리”란 직원의 건강을 유지·증진시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중대재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
 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 - 나. 3개월 이상의 요양을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
 - 다.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

제3조(적용범위)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안전보건업무의 우선) ①공단은 안전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산, 인력,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
②산업재해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, 설비, 기계, 장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시

정,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책임과 의무) 공단 임직원은 사업 부서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: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,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.
2. 관리감독자 : 공단 내의 관리감독자(사업부서장)는 법 제14조에 의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.
3. 안전·보건관리자 :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·조언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,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.
4. 명예안전관리감독관 : 공단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업무에 참여하여 법령 위반 사실 점검,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,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며,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5. 일반직원 : 공단의 전 사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사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조직과 직무

제6조(안전보건관리 조직) ①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
②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제7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①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·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본부장이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3.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
5.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6.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7. 사고,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8. 사고 및 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
9.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10.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집행
11.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제8조(관리감독자) ①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
2. 전기, 기계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
3.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고방지책, 안전보건 기준 및 수칙에 관한 숙달
4. 사고 및 재해원인 조사보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
5.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지도
6.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지도 감독

가. 안전 기준 및 수칙 준수

나. 자신과 동료 직원의 안전 도모

다. 불안전 요인의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상부기관 보고

라.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처리요령

마.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인

②이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, 시설·장비·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안전관리자)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업무 중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
2.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
3.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4.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
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대책수립

6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7.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8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9. 유해·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정기점사 및 자체검사 계획 수립
10.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
11. 안전관계 직원의 지도 및 독려
12. 안전점검, 교육,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
13.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
14.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
15.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
16.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

제10조(보건관리자)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업무 중 보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
2.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
3.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
4. 사업장 순회,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
5.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
6.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
7.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교육
8.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및 확인
9. 직업병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
10. 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11.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11조(명예산업안전담당관)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시 명예산업안전담당관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담당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
2.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검사 입회
3.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

4.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요청
 5.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 6. 작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 7.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 8.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·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9.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
 10.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 11.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·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③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제1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심의사항)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7조 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
2.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
3. 중대한 재해,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 이내 동수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.)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.

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.)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장(본부장)
2. 경영기획팀장, 사업부서 팀장
3. 산업·보건 대행업체 감독자

4. 기타 이사장이 위촉하는 직원 등

④간사는 사용자측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4장 안전보건 교육

제15조(안전보건교육) ①공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②자체교육은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자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, 특별안전보건교육,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③직무교육은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된 공단 내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
④안전보건 교육 시에는 자체교재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교재를 사용하여 실시하며,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다.

제16조(교육계획 수립) ①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도 1월 중에 연간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안전보건교육계획은 확정 즉시 전 사업부서에 통보하며, 각 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신규채용자 교육) ①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공단 「안전보건 관리규정」에 관한 사항

2.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,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

3.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

4. 위해설비,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: 기술직, 업무직

[개정 2024. 1. 16.]

5. 기계, 기구 등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: 기술직, 업무직

[개정 2024. 1. 16.]

6.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제18조(정기교육) ①정기교육은 사업 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상 필

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사업부서의 실정에 따라 매일,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②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
2.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
3.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5.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
6.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
7.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
8. 무재해 추진 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
9.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
10. 안전장치 및 방호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
11.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
12.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) ①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, 변경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제18조 제2항과 같다.

제20조(특별안전보건교육) ①법 시행령 「별표 2」의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8조, 제19조의 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.

②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.) 「별표 8」의 2의 라항과 같다.

제21조(관리감독자 교육) ①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정기교육은 교재, 강사확보 상 공단 자체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6시간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위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해야 한다.

제22조(직무교육) 공단의 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는 법 제3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23조(교육주기 등) ①관리책임자는 선임 3개월 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선임 3개월 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(단, 대행기관 위탁 시는 예외로 한다.)

제24조(교육실시 방법) ①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.

②교육 시에는 자체 교재나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된 외부교재를 활용하거나 또는 시청각 교육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제25조(교육 관계 서류 보존) ①교육실시 결과는 “별지 1”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교육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해수습 및 대책수립

제26조(재해등급설정) ①공단은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예상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“별표 2”와 같이 재해등급을 설정한다.

②공단은 재해등급에 따라 “별표 3”과 같이 동원명령권자와 동원 대상 인력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동원명령(비상소집) 및 수습(대응)한다. 이 경우 동원 대상 인력의 범위 및 규모는 재해등급별, 종류별로 명령권자가 동원 명령 시 최종판단하여 결정한다.

제27조(재해기구) ①공단은 제반재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수습, 복구하기 위하여 “별표 4”와 같이 재해대응 기구를 편성 운영한다. 이 경우 재해기동반과 현장지휘소는 재해 및 위험발생 현장에 설치하고, 재해 상황실은 공단본부에 설치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지휘소 편제는 재해등급별로 현장지휘자가 재해의 종류, 피해수준, 동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편제, 명칭, 임무, 편성인력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.

③3등급 이상 재해발생시 재해기동반 편성인력은 현장지휘소에 흡수 통합편성하며, 급박한 재해 상황 발생으로 재해기동반 운영단계를 거칠 여유 없이 곧바로 등급별 재

해동원 명령을 발령한 경우 현장지휘소 지휘자는 재해기동반 임무를 포함하여 해당 재해등급별 임무를 수행한다.

④3등급 재해발생 시 현장지휘소 지휘자가 필요임무를 판단 및 수행한다.

제28조(재해대비 사전조치) ①공단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각 사업 부서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

가. 한양종합중기 : 중장비 등 복구지원

나. 양천소방서 : 화재진화, 인명구조 및 긴급후송 등

다. 양천경찰서 : 주민 및 차량통제, 치안 및 방법활동 등

라. 관내병원(이대, 서남, 홍익) : 사상자 응급조치 및 치료 등

마. 수도사업소, 전화국, 도시가스 : 해당분야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안전조치 등

2. 재해등급별 동원 대상 인력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

3. 각종 방재 및 구호, 장비, 물자 비축

4. 그 밖에 재해관리에 필요한 기구, 표지, 피난로 등

②안전·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업 부서별 사전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9조(긴급조치)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

2.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

3.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

4. 기타 사고 처리에 필요한 행동

제30조(현장근무자 초동대처)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(인지)자는 해당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현장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 직원 및 이용고객을 긴급대피 조치한 후에 다음과 같이 초동 대처한다.

1. 재해발생 상황보고

2. 재난 등급별, 종류별 유관기관 지원요청

3.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재해확산 방지 조치

4.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

5. 재난현장 사진촬영 및 원상태 보존

6. 사고원인 파악 및 가해자, 피해자, 목격자 등 관련자 신원(진술) 확보

제31조(재해상황 보고) ①재해발생 상황은 지휘(보고)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

하여야 한다.

1. 보고는 재해발생 즉시 한다.
 2. 보고내용은 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에 중요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.
 3. 보고체계는 “별표 1”에 따라서 시행한다.
- 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청에 소관분야 재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재해발생 상황보고는 우선적으로 유선 보고한 후에 사후 종합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2조(재해조사 및 보고) ①누구든지 재해발생 현장을 사고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, 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재해(사고)현장에 출동하여 제30조에 “현장근무자 초동대처”임무 중 부진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속조치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조사포(보고용) 관할 지방노동지청 제출
2.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조치 권고(지도) 및 조언
3.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속한 피해보상
4. 재해보고서 작성·비치 및 3년간 보존관리

제33조(재해분석 및 대책) ①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 중 발생한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 익년도 1월중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, 대처 등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해분석 결과는 전 사업 부서에 통보하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재해·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4조(무재해 운동) ①공단은 소관 사업장의 위험이나 위해요인으로부터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.

②사업부서의 장은 소관사업장별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며, 무재해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제35조(안전보건 제안) ①공단은 수시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②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안은 공단 「혁신제안운영계획」에 따라 심사 및 포상한다.

제36조(상벌) ①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발굴하여 공단 「인사규정」에 따라 심사 및 포상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직원을 포상한다.

1. 안전보건제안에 채택된 직원
2.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및 직원
3.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

③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 공단 「인사규정」에 따라 징계 요청할 수 있다.

④제3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지시, 명령에 위반하거나 응하지 아니한 직원
2. 재해·사고의 은폐, 허위보고, 태만으로 재해·사고 사후처리를 지연한 직원
3.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직원
4. 상기 각 호의 위반 사항을 방조·묵인·담합한 직원

제37조(문서기록보존) ①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필요에 따라 1항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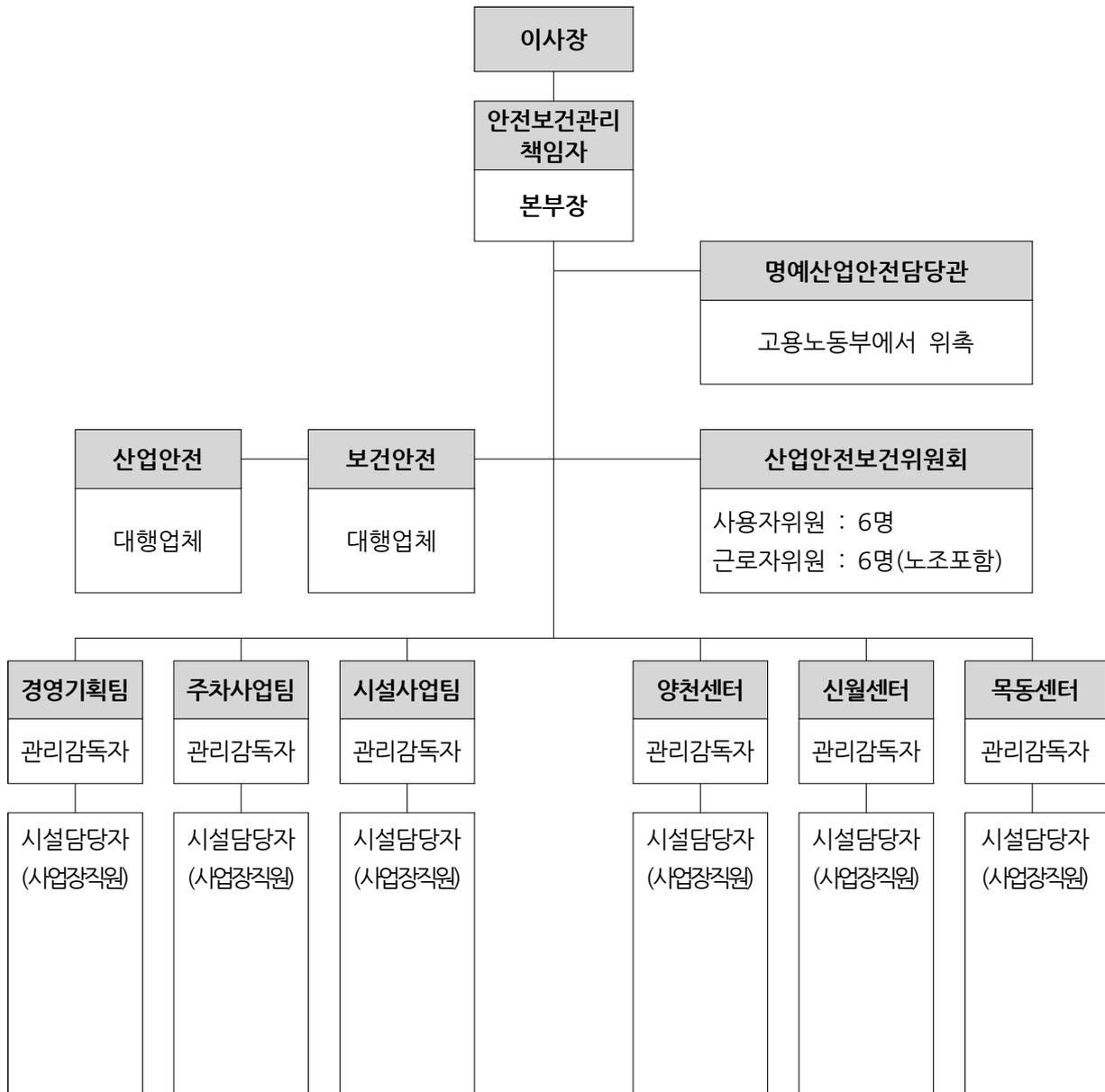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4. 1. 16.)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전보건관리 기구표



【별표 2】 (제26조제1항)

재해등급표

구분	재해상황(규모 및 피해정도)	근무형태
평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징후감시 필요시 • 예방활동 실시시(30mm/일 미만) 	-
보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우량 30mm/일 이상 예보시 	-
1단계 (주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우주의보 발령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시간 70mm이상 예보 - 12시간 110mm이상 예보 • 한강대교 수위 4.5m 도달시 • 태풍주의보(순간풍속 20m/s 이상) • 대설예보 발령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일적설량 3cm 미만 •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2cm미만 피해 • 경상자가 발생한 사고 • 그 밖에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대응(수습)가능한 중소 규모 재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직근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상 상황 예의 주시 - 구 소관부서와 협조
2단계 (경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우경보 발령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시간 110mm이상 예보 - 12시간 180mm이상 예보 • 한강대교 수위 8.5m 도달시 • 태풍경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풍속 26m/s 이상, 총 강우량 200mm이상 •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2cm 이상 ~ 5cm 미만 피해 •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• 재산피해규모가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재해 • 관리책임자 지휘 하에 재해수습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재해 • 유관기관의 부분적 협조(지원)가 필요한 재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직근무자 • 시설물관리 실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풍수해 위험 지역 순찰 강화 -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
3단계 (심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수경보 발령시 • 한강대교 수위 10.5m 예상시 • 지하주차장, 체육시설 침수 시 • 토사유입으로 토사퇴적 5cm 이상 • 사망 포함 중경상자가 5명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 • 재산피해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재해 • 이사장 지휘 하에 재해수습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재해 •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조(지원)가 필요한 재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 직원(업무직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 사업장 복구 지원 - 구청과 협업으로 구호활동 전개

【별표 3】 (제26조제2항)

재해상황 별 동원인력

재행상황	명령권자(부재 시)	동원대상인력(필요 시)	비 고
1단계	팀·관장 (시설관리담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장 업무직 인력 1/4 이상 ▶ 본부인력(경영,성과) 1/4 이상 	
2단계	본부장 (경영기획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장 업무직 인력 1/2 이상 ▶ 본부인력(경영,성과) 1/3 이상 ▶ 유관기관 부분적 인력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무과, 문화체육과, 교통지도과, 재난안전과, 치수과 등 	한양종합중기 (2651-6616)
3단계	이사장 (본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장 업무직 인력 전원 ▶ 본부인력(경영,성과) 전원 ▶ 유관기관 전방위적 인력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무과, 문화체육과, 교통지도과, 재난안전과, 치수과 등 ▶ 재난동원 임시 사용인력 10명이상 	필수인력 제외 한양종합중기 (2651-6616) 향토사단 (2685-3774)

【별표 4】 (제27조제1항)

재해대응기구

대응 기구	운영 시기	지휘자	편성 대상	편제	임무
시 설 관 리 담 당 (정부)	재 해 위 험 예 상 시	편성대상중 최상위 직급자	소관부서 담당직원	통합운영 (3명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해위험지역 예비순찰 및 취약지점 응급조치 ▶ 재해 대비 장비 및 물자 점검과 반출준비 ▶ 재해위험 상황판단 및 보고 ▶ 비상연락망 점검 및 보완 ▶ 재해상황 대고객 홍보 ▶ 주요지점 재해 위험표식 등 설치
종합 상황실	재 해 단계별	관리감독자 (1단계)	소관부서 팀장	상황관리 (4명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원인력전파 및 동원인력 비상소집 ▶ 동원인력·장비·물자파악 및 부족자원 지원요청 ▶ 동원인력편제·배치 및 교육 ▶ 동원인력 초과근무 대장관리 및 집계보고 ▶ 재해(수습)상황파악·보고 ▶ 동원인력 후생지원
		본부장 (2단계)		현장대응 (4명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고현장에 투입 및 상황정리 ▶ 외부 전문가 투입 전 초동대응 ▶ 재해현장에서 구호, 구급, 대피유도 등 전반적인 현장 대응
		이사장 (3단계)		인명구호 (3명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객 및 직원 긴급유도 대피유도 ▶ 피해지역 내 주민·차량 출입통제 ▶ 피해원인 파악·보고 및 연쇄(2차) 피해유 발요인 차단(제거)
				복구지원 (10명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해시설·장비 응급복구 ▶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▶ 사상자 가족관리 및 위문지원 ▶ 유관기관협조체계 유지 ▶ 재산 보호 및 소산 ▶ 재해현장 청소·방역 및 정화작업

